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70
----------	-------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발의자 : 박찬대 · 맹성규 · 유동수  
노종면 · 정일영 · 김교홍  
허종식 · 박범계 · 김준혁  
이훈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 · 결정을 위하여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 · 결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법 적용대상인 5·18민주화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위르겐 헌츠페터와 찰스 헨틀리의 경우 본인들이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위르겐 헌츠페터의 경우에는 5·18기념재단에 의하여 추모비 건립 및 추모공원까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5·18민주화유공자로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5·18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국립5·18민주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5·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4조 제2항 제2호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공현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결정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5·18민주화운동공현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5·18민주화운동공현자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생략)</p> <p>②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u>&lt;신설&gt;</u></p> <p><u>2. ~ 5.</u>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현행과 같음)</p> <p>2. <u>5·18민주화운동과 관련 공</u>  <u>현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u>  <u>사·결정</u></p> <p><u>3. ~ 6.</u>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